퇴직연금 실물이전 FAQ (4th Edition)

2024. 10. 31.

◆ 동 자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실물이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고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FAQ 내용은 향후 제도시행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습니다.

① 배경 및 적용범위

1

실물이전이란 무엇인가요?

- □ 퇴직연금 이전 시 가입자 요청에 따라, 기존에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이전받을 계좌로 실물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 ※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23.5.3, 퇴직연금복지과-2019)
 - 모든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실물이전 대 상이 아닌 상품들은 매도되어 현금으로 이전됩니다.

2

퇴직연금 제도 상호간 제한 없이 실물이전을 할 수 있나요?

- □ 동일한 유형의 퇴직연금제도 간*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이른바, 이전절차 간소화 대상) 실물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 DB↔DB, DC↔DC, 기업형IRP↔기업형IRP, 개인형IRP↔개인형IRP
 - 단, 합병·분사, 계열사 이동 등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이전절차 간소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DC에서 타사 IRP로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퇴직급여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DC가입자가 퇴직 시 IRP로 실물이전을 할 수 있으나, 현재는 DC 및 IRP 퇴직연금사업자가 동일한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실물이전이 되는 상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 □ 실물이전 대상 상품* 중에서 이전하는 금융회사(이하 "이관회사") 및 이전받을 금융회사(이하 "수관회사") 각각에서 '공통으로 판매 중인 상품'은 원칙적으로 실물이전이 가능합니다.
 - * 예금(은행·저축은행·우체국·증권금융), GIC(신탁제공형), 원리금보장ELB· DLB, 채무증권, 공모집합투자증권(MMF 제외), ETF 등
 - 수관회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은 실물이전 대상이 아니며, 기존 방식과 같이 매도 후 현금으로 이전됩니다.
- □ 공통으로 '판매 중인 상품'(라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예금 · GIC의 경우 개별협약, ELB · DLB의 경우 포괄협약, 공모펀드의 경우 위탁판매계약, 채무증권 · ETF의 경우 KR코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o 예금·GIC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상품제공기관이 체결한 만기별 공급계약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예) 1년물, 2년물만 공급계약을 맺은 경우 3년물·5년물은 라인업에 미해당
 - o ELB·DLB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상품제공기관이 포괄협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모든 회차가 라인업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o 공모펀드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상품제공기관(운용사)이 맺은 위탁판매계약 여부에 따라 라인업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 o 채무증권·ETF의 경우 KR표준코드 기준으로 라인업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 o DB·DC에서 플랜별로 라인업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사용자, 단체)의 경우 별도 구성된 라인업 기준으로 실물이전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실물이전이 안 되는 상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 □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ㅇ 보험계약, 언번들계약, 디폴트옵션
- □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실물이전 제외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분증권(리츠·회사형펀드 포함), 리츠, 사모펀드, ELF, ELS·DLS, RP, MMF, 종금사 발행어음, 금리연동형보험, 사모펀드, 환매불가 펀드, 만기매칭형 펀드, '원금'보장파생결합사채 등
- □ 실물이전 대상 상품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발생 시 실물이전이 불가합니다.(실물이전 불가상품)
 - 소규모펀드 임의해지*,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 운용지시 진행 중인 상품, 압류 및 질권 설정, 상품제공한도 초과**,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만기상환, 환매불가, 상품협약 미체결, 복수의 수익자가 단체 가입한 예적금 등
 - * 자본시장법 §192①단서에 따라 운용사가 금융위 승인 없이 해지하는 경우
 - ** 퇴직연금감독규정 §8의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한 금융기관별 투자한도(인당 5,000만원) 초과 불가 등
- □ 수관회사가 처한 사정에 따라 실물이전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는 상품제공수수료가 있는 상품, 이관회사에서 부담금 재원을 구분할 수 없는 상품 등입니다.

6

지침상 실물이전이 가능한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상품은 반드시 수관회사가 실물이전을 받아줘야 하나요?

□ 지침상 실물이전 가능상품으로 분류되었더라도 신탁에서의 가입자 분리 여부*, 가입자·사용자 부담금 관리방식**, 판매상품 라인업 등 수관회사가 처한 사정에 따라 실물이전 가능여부가 가변적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관회사에서는 실물이전을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 * 원칙적으로 가입자 분리가 안 되어 있으면 개별 가입자별로 실물이전 곤란
- ** DC에서 업권별·금융회사별로 부담금 관리방식이 상이하여 수관회사에서 해당 정보를 승계 받지 못하는 문제
- 가입자(사용자·근로자)가 현재 가입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가능한 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경우, 실물이전 가능여부 사전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全 퇴직연금사업자 간에 신용정보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사전조회 서비스 제공 불가. 사전조회 서비스 연기에 따른 가입자 안내사항을 사업자 온라인·모바일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에 게시
 - 가입자 안내사항 문구(예시)

가입자가 정식으로 실물이전을 신청하기에 앞서 실물이전 결과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의 제공이 지연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지연사유: 신용정보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약정 미체결
- 서비스 (예상)제공시기: 전체 사업자 간 약정체결이 완료되면 즉시 서비스 제공 예정
- 유의사항: 실물이전을 신청하면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로부터 유선전화, SNS 등의 방법으로 실제 이전의사를 묻는 연락이 오는데, 반드시 회사가 제공하는 실물이전 조회결과 및 안내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의사 확인단계에서는 언제든 이전의사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이전의사가 확인되면 더 이상 가입자의 취소 또는 철회가 불가하오니 신중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동일한 보험사에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을 각각 보유중이고 정기일에 자동투자비율이 세팅된 경우 실물이전 방법은 어 떻게 되나요?

□ 가입자에게 보험자산 매도 후 그 대금을 신탁계좌에 입금하고나서 실물이전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② 퇴직연금 이전업무 처리절차

(1단계) 실물이전 가능여부 사전조회

가입자가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실물이전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이관회사 또는 수관회사에서 본인 보유상품 중 실물이전 가능한 상품이 무엇인지를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이관회사 홈페이지, 모바일 웹페이지 · 어플리케이션 내 실물이전 조회 코너에서 이전받을 금융회사를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누르면 회사별로 어떤 상품이 실물이전 가능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사전조회 시점에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이었더라도 최종적으로 실물이전이 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조회시점과 완료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 등으로 인해서 실제 실물이전결과는 조회시점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수관회사 기준으로 실물이전 가능여부를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나일부 회사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실물이전 가능여부 조회 결과는 실시간으로 알 수 있나요?

- □ 이관-수관회사 간 배치(batch) 전문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실물이전 가능여부 조회 결과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고객에게 정확히 안내한 후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 또한 실물이전 조회 결과가 나오면 그 사실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알림톡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하여 고객이 확인하도록 합니다.
 - 이를 위해 이 · 수관회사는 고객의 빠른 결과 확인을 위해 지체 없이 응답을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실물이전 가능여부 조회 전문의 작성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 사전조회와 업무조회의 두 경우 모두, 이관회사는 이관회사 기준으로 상품별 이전가능여부와 그 불가사유를 표시하고, 수관회사는 수관 회사 기준으로 이전가능여부와 그 불가사유를 표시합니다.
 - 이 · 수관회사 공통으로 실물이전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상품에 한해서, 조회자(가입자)에게 실물이전 '가능'으로 결과 안내합니다.

[실물이전 가능여부 사전조회]

	이관:	회사	수관호	상품별	
구분	실물이전 가부	불가사유	실물이전 가부	불가사유	실물이전여부
예금 1년	Υ	-	N	협약X	N
예금 3년	Υ	-	Υ	-	Υ
스스펀드	N	환매수수료有	Υ	-	N
ELB	Υ	-	Υ	-	Υ

4

가입자가 실물이전 가능여부를 조회한 결과, 실물이전 가능 하다고 나온 상품 중 일부만 골라서 실물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 □ 실물이전을 희망하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유상품이 어느 정도까지 실물이전 가능한지가 이전할 금융회사 선택 시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이므로, 이를 돕기 위해 실물이전 가능여부 조회 서비스를 반 드시 제공하도록 합니다.
- □ 신속하고 간명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실물이전을 신청 하면 보유상품 '전부'를 실물이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예외) DB법인이 이관회사를 방문하여 '상품단위'로 실물이전 신청 가능
 - ㅇ 즉, 보유상품 '일부'를 선택해서 실물이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가입자는 기존의 '전액 현금' 방식과 이번에 새로이 허용되는 '실물' 방식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 이관회사에서 판매 중이나, 수관회사에서는 라인업에 있지만 판매를 안 하는 상품은 실물이전이 가능한가요?
- (2)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는 실물이전이 가능한가요?
- □ 일시 판매중지의 경우 신규(추가) 매수는 불가하지만 기보유분의 환매 또는 계속 운용에는 제약이 없으므로 실물이전 가능합니다.
 - 다만, 영구적으로 판매가 중단된 상품은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 □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펀드, CDSC(체감식보수) 구조의 펀드는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실물이전 조회시 이관회사에서는 실물이전 불가 상품으로 처리합니다.

6

맵스리얼티, 맥쿼리인프라 등의 상장형 집합투자증권도 실물이전 가능한가요?

- □ 회사형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은 주식과 동일하게 실물이전 제외대상 이지만, 신탁형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은 실물이전 대상 상품입니다.
 - o 맵스리얼티, 맥쿼리인프라는 회사형 펀드에 해당하므로 실물이전 제외대상입니다.

7

타사 계좌에 상품이 보관된 경우 실물이전이 가능한가요?

□ 이관회사도 아니고, 발행회사도 아닌 제3의 회사 계좌에 보관 중인 증권(채권, ETF)의 경우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품제공수수료가 있는 상품은 실물이전이 되나요?

- □ 실물이전 조회 시 이관회사가 상품제공수수료 포함 여부(Y/N)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수관회사에 전달하면, 수관회사에서는 실물이전을 받을지 말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이관회사는 상품제공수수료 포함여부 정보를 명세별로 관리하여 수관 회사에 전달
 - 수관회사에서 상품제공수수료가 부착된 상품의 실물이전을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상품은 매도되어 현금으로 이전됩니다.
 - o 수관회사에서 상품제공수수료가 부착된 상품의 실물이전을 받는 경우 상품제공기관과 수수료를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상품제공수수료가 금지되었으므로 시간 경과에 따라 수수료 부과상품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상품 제공수수료 부과 상품이 모두 소멸된 이후에는 동 사유를 근거로 실물이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9

DC형 상품을 DC계좌에서 같은 회사의 IRP로 실물이전을 한 고객이 재차 타사 IRP로 실물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실물이전이 가능한가요?

- □ DC형 저축은행예금 등 제도별 상품코드가 상이한 'DC형 상품'의 사내 IRP 이전은 무방하나, 타사 IRP로 재차 실물이전은 불가합니다.
 - ※ 정기예금・GIC 등 제도별 상품코드는 동일하지만 상품제공기관에서 제도별로 다르게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시스템 개시 時에는 최초 DC에서 매수한 정기예금・GIC를 'DC형 상품'으로 보고 업무처리하는 방향으로 결정. 즉, 이번 시스템 구축시에는 최초 DC에서 매수한 상품은 DC간에서만 실물이전 가능하고, 사내에서 IRP로 이전된 이후에는 재차 타사 IRP로 실물이전 불가 ⇨ '25년 상반기 중 개선 추진

가입자 부담금(2013년 이전/이후), 사용자 부담금의 재원에 따른 상품관리방식이 사업자마다 다른데, 이들 간에 실물이전이 가능한가요?

- □ 퇴직연금사업자 중에는 상품별로 부담금 재원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금융회사와 그렇지 않은 금융회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 부담금을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는 이관회사에서, 부담금을 구분하는 수관회사로 실물이전을 하는 경우 수관회사 입장에서는 부담금 재원을 임의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실물이전을 받기 곤란합니다.
- □ 부담금 재원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이관회사는 실물이전조회 전문의 '2013년 이전 가입자부담금', '2013년 이후 가입자부담금', '사용자부담금' 중 해당하는 란에 이전원금, 이전좌수, 이전금액을 각각 기입한 운용상품목록을 제공합니다.
 - ※ 해당 재원 란에 금액정보 입력하고 미해당 재원 란에는 0(영) 입력
 - 부담금 재원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는 이관회사의 경우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품(명세)별 재원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 분리방식은 각 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단일 재원으로 분리한 상품(명세)은 해당하는 란에 이전원금, 이전 좌수, 이전금액을 각각 기입하고, 전문의 '재원에 따른 상품관리 방식'에서 '구분'을 선택합니다.
 - 복수 재원으로 분리한 상품(명세)은 해당하는 복수의 란에 이전 원금, 이전좌수, 이전금액을 각각 기입하고, 전문의 '재원에 따른 상품관리방식'에서 '미구분'을 선택합니다.
 - ※ 단일명세 방식을 채택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은 단일 재원이든, 복수 재원이든 하나의 전문으로 송부
- □ 특정 상품의 '재원에 따른 상품관리방식'이 '구분'이라면 수관회사가 이전받는데 제약이 없지만, '미구분'이라면 수관회사가 부담금 재원을 어떻게 관리 중인지에 따라 실물이전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담금 재원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수관회사의 경우 하나의 상품에 복수의 재원이 존재하더라도 재원별 분할이 가능한 상품(펀드 등)이라면 수관 가능하나, 재원별 분할이 불가능한 상품(예금 등)이라면 수관 불가합니다 이 경우, 실물이전 불가사유(수관)를 '20.
 사용자/가입자부담금 미분리'로 선택합니다.
- ㅇ 부담금 재원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는 수관회사는 수관가능합니다.

[재원 배분 관련 예시(I)]

※ 대략적인 예시이며, 회사별로 다르게 운영 가능

가입자 A	'13년 이전 가입자	부담금 '13년	'13년 이후 가입자부담금		사용자부담금	
71871 A	100		300		800	
		·				
	상품명	원금	금리	좌수	평가금액	

보유상품(I)	상품명	원금	금리	좌수	평가금액
	은행예금1년	200	3%	-	206
	저축은행예금1년	200	4%	-	208
	저축은행예금2년	200	5%	-	210
	주식형펀드	300	-	303	320
	채권형펀드	250	-	252	240
	현금성자산	50	-	-	50

Step1) '13년 이전 가입자부담금 100 중 50은 현금성자산에 할당, 나머지 50은 수량상품 (편의상 채권형펀드)에 할당

 \int

Step2) '13년 이후 가입자부담금 300 중 200은 앞선 채권형펀드 잔액(250-50)에 할당, 나머지 100은 수량상품(주식형펀드)에 할당 _

Д

Step3) 사용자부담금 800 중 200은 앞선 주식형펀드 잔액(300-100)에 할당, 나머지 600은 원리금보장상품 3개에 할당

배분결과	'13년 이전 가입자부담금	'13년 이후 가입자부담금	사용자부담금	가입자+사용자	재원구분*
은행예금1년	0	0	200	200	구분
저축은행예금1년	0	0	200	200	구분
저축은행예금2년	0	0	200	200	구분
주식형펀드	0	100	200	300	미구분
채권형펀드	50	200	0	250	미구분
현금성자산	50	0	0	50	구분

※ 재원을 구분하지 않는 수관회사의 판단 프로세스(예시) : ①'구분'은 받는다 → ②'미구분' 中 펀드는 (재원별 분할이 가능하므로) 받을 수 있다

[재원 배분 관련 예시(Ⅱ)]

보유상품(II)	상품명	원금	금리	좌수	평가금액
	은행예금1년	400	3%	-	406
	저축은행예금1년	400	4%	-	408
	저축은행예금2년	350	5%	-	360
	현금성자산	50	-	-	50

Step1) 중도해지로 인한 가입자 불이익(매도대상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용자부담금 800을 은행예금1년, 저축은행예금1년에 우선 할당

Step2) '13년 이전 가입자부담금 100 중 50은 현금성자산에 할당, 나머지 50은 저축은행 예금2년에 할당

Step3) '13년 이후 가입자부담금 300은 앞선 저축은행예금2년 잔액(350-50)에 할당. 이 때, 저축은행예금2년은 두 개의 재원이 존재하므로 '미구분'으로 표기

배분결과	'13년 이전 가입자부담금	'13년 이후 가입자부담금	사용자부담금	가입자+사용자	재원구분
은행예금1년	0	0	400	400	구분
저축은행예금1년	0	0	400	400	구분
저축은행예금2년	50	300	0	350	미구분
현금성자산	50	0	0	50	구분

- ※ 재원을 구분하지 않는 수관회사의 판단 프로세스(예시) : ①'구분'은 받는다 \rightarrow ②'미구분' 中예금은 (재원별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못 받는다
- □ 이관회사는 상품별 '재원에 따른 상품관리방식'이 구분이든, 미구분 이든 관계없이 실물이전조회 전문에서 실물이전 가능여부를 '가능' 으로 전달하고, 수관회사는 실물이전 가능여부를 자체 판단해서 '가능' 또는 '불가'로 회신합니다.
 - 수관회사가 실물이전 불가 처리 시 해당 상품은 현금이전 합니다.

 \triangle 은행 정기예금 6M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수관회사에는 \triangle 은행 1Y, 2Y 상품만 판매중일 때, 실물이전이 가능한가요?

- □ 정기예금은 개별 상품제공협약을 기준으로 라인업을 판단합니다.
 - o 따라서, 협약상 제공상품 리스트에 6M 상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물이전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물이전이 불가능합니다.

12

상품제공협약과 실제 라인업이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실물이전 가능여부를 판단하나요?

- □ 모든 만기를 포괄하는 것으로 상품제공협약(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라인업은 1년물·3년물 등으로 협소한 경우 실제라인업을 기준으로실물이전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 협약 상으로는 5년물의 판매가 가능하더라도 실제로는 5년물을 판매중이지 않고, 판매한 적도 없는 경우 '판매 중인 상품' (라인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13

동일한 예금상품인데, 가입자 분리前 매수분과 가입자 분리後 매수분이 모두 있는 가입자의 실물이전 가능여부는?

- □ 예금은 명세별로 실물이전을 진행하므로 가입자 분리前 매수분은 실물이전이 불가하지만, 가입자 분리後 매수분은 다른 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물이전 대상입니다.
- □ 한편 '24.10.31일 이후로는 가입자별로 구분해서 매수 운용지시를 하여야 합니다.

단체 명의로 가입한 상품의 실물이전이 가능한가요?

- □ DC에서 복수의 가입자(N명)가 동일한 예금상품을 매수하는 경우 가입자 분리가 안 된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관행상 매수주문을 N건으로 보내지 않고, 모아서 1건으로 가입(매수)을 해왔습니다.
 - o 이러한 단체가입상품은 실물이전에 따른 분할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금이전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실물이전 가능여부 조회 시 이관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이전 불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 □ 하지만, 사업자가 관행상 처리해온 업무처리방식 때문에 가입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향후에는 '인별로' 건건이 매수주문을 내도록 실물이전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은행 예금의 경우에도 자산관리기관(RA)에서 가입자 분리가 안 된 경우 실물이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가입자별 운용지시 분리를 하거나, 자산관리기관에서 매수주문을 N건으로 보내는 등의 조치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15

이관회사에 복수의 IRP 계좌를 보유한 가입자가 수관회사에서 실물이전 가능여부 조회를 한 경우, 이관회사에서는 어떻게 회신해야 하나요?

□ 복수의 IRP 계좌에 보유 중인 계좌·상품 전부에 대해서 실물이전 가능여부를 실물이전조회결과 전문으로 회신합니다.

상품제공기관이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에 제공하는 상품코드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 □ 상품제공기관 대부분은 발행상품에 공통 상품코드*를 부여하여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있지만, 상품제공기관 일부가 같은 상품임에도 자산기관별로 다른 상품코드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 증권형 상품: KR코드 / 非증권형 상품: 상품제공기관이 부여한 코드
 -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가능하려면 사업자 간에 동일한 상품인지를 비교 식별할 수 있는 공통 상품코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 □ 같은 상품인데도 자산기관 별로 다른 상품코드를 부여하는 상품제 공기관의 경우 제도시행일 전까지 반드시 상품제공기관 상품코드를 통일하는 조치(예: 특정일자에 사업자 전부를 대상으로 일괄 코드 변경)를 해야합니다.

17

러시아펀드 가입자가 실물이전을 원할 경우 처리방법은?

- □ 러시아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6조 제1호 나목 및 제2 호 다목에 대항되는 사항으로 실물이전 불가 대상입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6조 제1호 나목(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 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 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제2호 다목(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 러시아증권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 거래중단조치로 인한 거래제한
- □ 'DC 전부이전' 시 러시아펀드가 포함된 경우, 해당 이전신청 건을 취소하고 'DC 일부이전'으로 재신청(러시아펀드 보유자를 명부에서 제외) 처리합니다.

디폴트옵션은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전문에 있는 실물이전 불가사유 중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하나요?

□ '실물이전 불가사유(이관)'에서 '23. 실물이전불가'를 선택합니다.

19

사전조회에서 실물이전 불가사유 중 '07. 운용지시 진행중'은 매도운용지시, 매수운용지시를 모두 포함하는 건가요?

- □ '07. 운용지시 진행중'은 이관회사만 선택 가능합니다.
 - 매도운용지시의 경우 가입자가 취소하지 않는 한, 실제 실물이전 시점에는 실물이전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타사 이전이 곤란한 상태에 놓일 수 있으므로 실물이전 불가로 처리합니다.
 - o 매수운용지시의 경우, 실제 실물이전 시점에 장애요소가 없다라면 실물이전 가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신규계좌 개설, 이전신청서 작성

1

실물이전 신청서 관련 변경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 이전신청서 및 구비서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전 대상: '전액 현금이전'과 '실물이전' 중 양자 택일
 - 2) 이전의사 확인: 기존에는 이관회사에서 (현금)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이전의사 확인이 불필요했지만, 실물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실물이전 업무조회 결과가 나온 후에 이전의사 확인이 이뤄지므로 '전화통화 등'으로 반드시 선택
- 3) 휴대전화 LMS, 알림톡 등의 온라인 의사확인방법 인정
- 4) 이전가입자 명부 : 연락처 및 실물이전 여부 란 추가, 유의사항 변경

2

DB형 퇴직연금의 일부 적립금을 실물이전으로 요청하는 경우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DB 적립금의 일부 이전 시 이전금액이 미확정된 실물이전의 경우 '이관회사'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 범위를 먼저 조회하고 해당 상품 중에서 선택하되, 특정 상품 단위 전체로 실물이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특정 상품을 쪼개서 일부만 실물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 일부 적립금을 실물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수관회사에서 실물이전 입고일 이후부터 적립금 수익률 조회가 가능함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마다 계좌수익률 산출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관 회사가 가입자 이전의사 확인 시 안내해야 합니다.

DC 전부이전의 경우 현금이전은 마지막 가입자의 상품이 모두 매도되었을 때 모든 가입자를 한번에 이전처리하는데, 실물 이전도 동일한 형태로 이전처리를 하면 될까요?

- □ DC 일부이전 시 사용자는 실물이전을 선택할 수 있고, 개별 가입자 별로 실물이전 의사 확인 후 1명씩 진행 처리합니다.
 - ※ DC 실물이전은 개별 가입자에게 이전의사를 확인해야 하므로 IRP 실물이전처럼 하나씩 처리(one by one) → 인별(N명)로 접수번호를 채번(N건)
 - 실물이전을 신청한 개별가입자 기준으로, 그 보유상품 중에서 실물 이전 불가로 매도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 긴 환매기간을 가진 상품 까지 모두 환매(매도)된 후 해당 가입자를 이전 처리합니다.
- □ DC 전부이전 시 '사용자'는 실물이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이전의사 확인만으로 해지 및 이전이 가능한 현금이전 방식과 달리 실물이전은 '개별 가입자'마다 일일이 이전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전부이전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큽니다.
 - o DC 전부이전을 앞둔 사업장에서는 실물이전을 희망하는 가입자들 대상으로 일부이전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현금이전을 희망하는 잔존 가입자 대상으로 현금이전 방식의 전부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전이 모두 완료되면 이관회사가 계약해지·종료 처리합니다.
 - ※ DC 가입자가 소수이고, 전부가 실물이전을 희망하는 경우까지 이관 회사가 명목상 '계약이전'으로 처리해서 가입자의 실물이전 기회를 박탈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 '가입자 이전'으로 처리하되, 마지막 가입자까지 실물이전 처리완료 되고 회사(사용자)에 더 이상 계약유지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뒤에 계좌해지(폐쇄) 처리

DB에서 펀드는 일부 좌수 이전이 가능한가요?

□ 집합투자증권은 상품코드별 보유좌수 전부를 실물이전합니다. 상품 코드별 일부 좌수만 실물이전할 수 없습니다.

5

사전조회 결과 보유상품 전부가 실물이전이 불가능한데도 가입자가 실물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가입자가 실물이전 가능여부 조회 결과 실물이전 가능상품이 없어도 가입자는 실물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이·수관회사가 실물이전 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에서는 고객의 실물이전 가능여부 조회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음
 - 이관회사는 이전의사 확인 시점에 가입자에게 실물이전 가능여부 업무조회 결과를 통지하며, 이전예정(취소) 및 이전접수(거절) 통보 절차를 거쳐서 실물이전 가능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 이때 실물이전 가능상품이 있으면 실물이전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실물이전 가능상품이 없으면 (전액)현금이전 처리됩니다.
 - ※ 다만, 이관회사가 보험사이고 실물이전 가능상품이 없는 경우 이관 회사에서 실물이전 취소 통보하고, 수관회사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다시 현금이전 신청할 것을 안내하게 할 수 있음

6

가입자가 직접 매도해야 하는 상장상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 주식(DB한정), 리츠는 실물이전 제외상품이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직접 매도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가입자가 이관계좌에서 직접 매도한 후 비로소 (현금)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o ETF는 원칙적으로 실물이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이유로 실물 이전이 안 될 수 있고, 이 경우 상황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 □ (사전조회) 가입자가 이관회사에서 이전신청을 할 때 이관회사는 가입자의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운용상품에 상장상품이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실물이전 가능여부 사전조회를 했는지를 묻고, 안 했다고 답한 경우 가급적 가입자에게 사전조회를 먼저 하도록 안내합니다.
 - ※ 가입자가 수관회사에서 이전신청을 하는 경우 수관회사에서도 가입자에게 사전조회 권고
 - 사전조회 결과 실물이전이 불가인 상장상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직접 해당 상품을 매도한 후에 다시 이전신청 하도록 안내합니다.
 - ※ 가입자 안내사항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이전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음
- □ (업무조회) 이관회사가 업무조회한 결과 실물이전 불가인 상장상품이 있는 경우 '가입자 이전의사 확인' 단계에서 가입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 ㅇ 가입자가 직접 해당 상장상품을 매도해야 한다는 사실
 - ㅇ 일정기한 내 매도하지 않을 경우 실물이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 ※ 이를 위해 이관회사는 매매를 막아놓은 계좌에서 매도가 되도록 조치 필요 / 가입자가 기한 내 매도주문 체결한 경우 다음 단계 진행 가능
- □ 이관회사는 가입자가 실물이전 불가인 상장상품을 직접 매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관회사가 가입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명확하게 한 경우, 운용관리계약서에서 정한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가입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명확하게 한 경우, 기한 내 계약이 미완료되더라도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관회사가 가입자에게 실물이전 불가인 상장상품을 직접 매도해야 함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가입자가 계속해서 매도하지 않을 경우 이관회사는 수관회사로 이전예정취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사항은 상장상품을 보유한 가입자가 전액현금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3단계) 이전신청(취소)

1

실물이전 신청의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 실물이전 신청의 취소 절차는 현금이전 신청의 취소와 동일합니다.
 - (DB·DC) 이전신청 당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금융회사에 취소 의사를 표시(유선·방문·이메일·Fax 등)하거나,
 - 익일부터 이전받을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실물이전 의사를 재확인 하는데, 이때에 이전신청서 상의 이전의사 확인방법에 따라서 실 물이전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IRP) 익일부터 이전받을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실물이전 의사를 재확인하는데, 이 때 이체신청서 상의 이체의사 확인방법(전화통화 또는 영업점 방문)에 따라서 실물이전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 법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정상적인 처리 프로세스 이후 금융회사 간 비정상적인 취소 협의 요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관회사가 실물이전 신청 전문을 수신한 뒤에, 가입자가 실물이전 대상 상품의 매매지시를 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 실물이전 신청 의사와 해당상품 매매 의사는 동시 존재가 불가능 하므로, 가입자에게 "실물이전 신청을 취소해야 매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합니다.
 - 안내받은 가입자가 매매를 계속하기를 희망하면 이관회사로부터 이전의사 확인을 통해 실물이전 신청취소를 해야 하며, 취소하지 않을 경우 매매지시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이전신청이 접수된 상태에서는 운용지시, 예약매매 등이 모두 중지 되며 입금이 되더라도 운용지시가 불가합니다.

(4단계) 실물이전 가능여부 업무조회

1

실물이전 가능여부 사전조회와 업무조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 □ 조회시점·주체, 조회목적이 다를 뿐 조회항목은 동일합니다.
 - (조회시점·주체) 사전조회는 가입자가 시간의 구애 없이 여러 번할 수 있고, 업무조회는 이관회사가 실물이전 신청서 접수 후에 1회에 한해서 시행합니다.
 - (조회목적) 사전조회는 가입자가 어디로 이전을 할지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지만, 업무조회는 가입자가 수관회사를 정한 후 이관회사가 가입자의 실물이전 의사를 재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2

DC 실물이전 신청단계에서 개별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실물이전을 신청하였음에도, 업무조회에서 실물이전 가능상품이하나도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 실물이전 신청 시 이전가능 상품과 실제 실물이전 시 이전가능 상 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 이 경우, 취소 후 재신청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가입자의 이전 의사가 변함 없다면 가입자 편의 제고를 위해 현금이전으로 전환 해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 현금이전 시, 송금일(T) 이관회사가 수관회사에 보내는 '이전상세 내역(A)'의 '이전 대상'란에 '3'으로 표시하고 현금 송금총액에 포함 합니다.

(5단계) 이전의사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1

새롭게 추가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에 따른 의사확인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 DC·기업형IRP 실물이전의 경우 '사용자'의 이전의사 확인 대신에 '개별 가입자' 이전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o 이때, 유선통화 외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에 따른 인증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인증방법은 LMS, 알림톡 등을 통해서 개별 가입자에게 실물 이전 가능여부 업무조회 결과를 안내하고, 본인인증(공인인증·간편인증 등)을 거쳐서 가입자 이전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이관회사는 가입자의 이전의사 확인시점 및 그 내역을 관리합니다.
- □ 개별 가입자가 상기 온라인 안내 방식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통화를 시도해서 실물이전 가능여부 업무조회 결과 및 가입자의 실물이전 의사를 확인합니다.
 - 충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화실패 등으로 녹취가 불가능하거나,
 녹취 시 가입자가 신청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실물이전 신청을 취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DC 이전에서 실물이전과 전액현금이전 신청자가 뒤섞인 경우 이전의사 확인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전액 현금이전을 신청한 가입자만을 따로 구분해서, 전체를 1건으로 처리하고 사용자한테 이체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 실물이전의 경우 개별 가입자 이체의사를 확인받고, 개별적으로 이전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가입자별로 건건이 접수번호를 채번 하여 업무처리를 진행합니다.

DC에서 사용자가 이관회사를 방문해서 실물이전을 신청했을 때 이전의사 확인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종전에는 DC에서 사용자가 이관회사를 방문해서 (현금)이전 신청한 경우 이전의사 확인 없이 곧 바로 이전예정통보를 하였지만, 실물이전 신청의 경우 바로 이전예정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o 이관회사는 이전신청 접수 즉시 가입자가 추가 운용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매매불가 조치를 하고 예약매매 등의 사전예약도 모두 중지하며, 부담금이 입금되더라도 운용지시를 중단합니다.
 - o 접수순서에 따라 가입자별로 실물이전 가능여부 업무조회 및 이전 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이전예정통보 합니다.

4

이체신청서에 실물이전 신청했는데, 결과적으로 전액 현금으로 처리되는 경우 이체의사를 누구에게 확인하나요?

□ 신청 기준으로, 전액현금이전 신청 시 사용자한테 이체의사를 확인 받고, 실물이전 신청 시에는 가입자(근로자)한테 이체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6단계) 이전예정(취소) 통보

1

실물이전에서 이전예정 통보서 발송 시 함께 송부하는 '실물 이전 운용상품목록'은 무엇인가요?

- □ 5단계 이전 의사 확인 시 개별 가입자에게 안내된 실물이전 가능 여부 조회결과를 기준으로,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에 한해서 운용 상품목록을 작성합니다.
 - 개별 가입자 계좌별 상품 건수를 기록하고, 상품별·명세일자별*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 * 펀드 및 ETF는 합산명세 1건으로 작성

2

DB법인이 이관회사 방문하여 운용 중인 상품 일부만을 실물이전 신청하는 경우, 이관회사가 이전예정 통보 시 함께 발송하는 '실물이전 운용상품목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DB법인이 이관회사에 실물이전 신청을 하면, 이관회사가 DB법인 상대로 이전의사를 재차 확인하지는 않지만, 운용 중인 상품 전부에 대해서 실물이전 가능여부 업무조회를 합니다.
 - 이전예정 통보 시 이관회사는 업무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실물이전 신청 상품 중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에 한해서 운용상품목록을 송부합니다.

(7단계) 이전접수(거절) 통보 및 실물이전 요청

1

실물이전하는 상품이 원리금보장ELB인 경우 회차별로 별도 등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원리금보장 ELB는 발행회차별로 KR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건건이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 수관회사의 경우 이전 접수 통보서 발송 전(이전예정 통보 직후) 실물이전 대상인 ELB의 KR코드를 활용해서 최소한의 상품등록(운용 기관상품코드, 자산기관상품코드 등)을 미리 진행하고, 이 정보를 이관회 사에 전달합니다.
 - o 송금일에 수관회사는 이관회사로부터 전달 받은 '실물이전 결과 전문'에 필수항목으로 있는 ELB 상세정보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ELB 상품정보를 입력합니다.
 - ※ 이는 ELB가 포괄상품협약 방식이기 때문으로 예금, GIC 등의 다른 상품에는 해당사항 없음

2

실물이전 요청을 하는 시점과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 수관회사가 이전접수 통보를 하는 시점에 실물이전 요청 전문을 함께 송부합니다.
 - 이관회사가 발송한 '실물이전 운용상품목록'을 기준으로 수관회사가 최종적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상품만을 대상으로 실물이전 요청 전문을 작성합니다.
 - 해당 전문 항목은 '실물이전 운용상품목록'에 담긴 내용과 큰 차이가 없고, 실물이전 받을 수관회사 정보 등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8단계) 실물이전(계좌대체) 청구(취소)

1

상품제공기관은 이관회사의 실물이전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 □ 이관회사가 상품제공기관에 실물이전을 청구하면 상품제공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전물량의 매수기관 명의를 수관 회사로 변경하고, 계좌 간 물량 변동을 반영해야 합니다.
- □ 다만, 정당하지 않은 실물이전 청구(예시: 수관회사가 판매라인업에 없는 상품을 착오로 실물이전 요청하였고, 이에 근거해서 이관회사가 실물이전 청구) 등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상품제공기관은 실물이전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관회사 또는 수관회사로 하여금 실물이전(계좌대체) 청구를 취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종전에는 상품제공기관의 역할이 따로 없었는데, 실물이전 으로 상품제공기관 역할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 □ 이관회사와 수관회사 간 실물이전이 이뤄지는 경우, 상품제공기관 내부적으로는 기존 제공 상품의 대체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 o 가령, 상품제공기관 A가 퇴직연금사업자 B에 예금을 공급했는데 가입자가 그 예금을 들고 다른 사업자 C에게로 넘어가는 경우에
 - A社 상품설정해지 파트에서는 실물이전 금액만큼을 B계정에서는 빼고, C계정에는 더해주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 □ 이러한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관회사에서는 상품제공기관에 '실물이전 청구' 전문을 보내고, 내부 대체처리가 완료되면 반대방향으로 '실물이전 결과' 전문을 보내게 됩니다.
 - o 이러한 전문 교환은 예탁결제원 퇴직연금 허브망을 통해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실물이전 취소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 편의상 실물이전 취소 사유에 따라 확정취소, 매도취소, 기타취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확정취소) 전쟁, 천재지변 등으로 매도와 이전 둘 다 곤란한 경우입니다.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일부금액 이체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가입자의 해당 이전 접수 건을 취소합니다.
 - (매도취소) 문제가 되는 상품을 매도하면 실물이전이 여전히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관회사는 해당 상품의 매도 결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 영업일(새로운 송금일)에 실물이전(계좌대체) 청구 단계부터 진행합니다.
 - o (기타) 원천취소와 매도취소 외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전산장애 등 시정(是正)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천취소와 구별되고, 상품매도가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매도취소와 구별됩니다. 시정이 완료되는 날에 실물이전(계좌대체) 청구 단계부터 진행합니다.

(9단계) 실물이전명세 및 이전명세 송부

1

실물이전명세서의 상품별 원금, 평가액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 원금은 이관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원금을 사용합니다.
 - 단, 신탁제공용 GIC의 경우 원금이 없기 때문에 최초매수금액, 지급 금액 정보를 활용하거나 전일자 평가금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평가금액은 송금일(T)의 전일자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실물이전명세서를 송부할 때, 상품별 보유명세 전부를 송부해야 하나요?

- □ 예금, GIC 등 명세형 상품의 경우 모든 명세를 송부합니다.
 - ※ 만기가 연장된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최초매수일자' 정보 필요
 - o 펀드는 보유명세를 1건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이전원금, 이전좌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실물이전에서 별도의 매도지시 전문이 필요한가요?

- □ 기존 현금이전 방식 하에서 매도지시 전문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ㅇ 별도의 매도지시 전문은 불필요합니다.

4

실물이전 시 송금일(T)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 □ (매도상품이 있는 경우) 환매기간이 가장 긴 상품까지 모두 환매된 날의 다음 영업일
- □ (매도상품이 없는 경우) 수관회사가 16시 이전에 이전접수한 경우 다음 영업일, 16시 이후에 이전접수한 경우 이전접수일+2영업일

실물이전과 현금이전이 둘 다 있는 경우 실물이전명세와 현금 송부 순서가 따로 있나요?

- □ 전액현금이전은 종전과 같이 송금일(T) 중에 이체명세 및 연도별 납입내역을 발송하고 현금을 송부합니다.
 - 실물이전의 경우 실물이전 청구 결과를 모두* 통보받은 이관회사는 송금일(T) 14시 30분까지 수관회사에 실물이전명세서 또는 해당 전문을 송부합니다. 이후 이체명세 및 연도별 납입내역을 발송하고 현금을 송부합니다.
 - * 송금일(T) 실물이전 청구 상품이 N개인 경우, N개의 실물이전 결과를 14시까지 모두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1개라도 오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당일 실물이전 처리 불가
- □ 현금 송부를 끝으로 이전이 모두 완료되면 이관계좌를 폐쇄합니다.

6

상품 전부 실물이전으로 현금 송금액이 0원이어도 이체명세서를 보내야 하나요?

□ 이체명세서의 이체금액은 현금(cash)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 이전되는 상품의 평가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금 송금액이 0원 이더라도 이체명세서를 보내도록 합니다.

7

보험사 GIC 상품은 원금 개념이 없는데, 원금이 필요한 누적 수익률 등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보험사 GIC 상품의 원금은 이관회사에서 제공받는 실물이전명세서의 이전원금을 사용하여, 상품별로 상품제공기관으로부터 평가정보를 받아 수익률을 산출합니다.

- o 다만, 이전원금 기재가 필수가 아닌 GIC*의 경우 수관회사에서 이전 원금 자체 계산방식을 정의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이전원금(매입원금) = 평가금액 $\frac{ \text{평가금액}}{(1+적용이율/100)^{(운용일수÷365)}}$
 - * GIC의 경우 이전원금 기재가 필수는 아니지만 이관회사에서 기재한 경우 그 원금의 사용여부를 수관회사에서 판단
- ** 운용일수는 명세일자 또는 최종 만기연장일자부터 前영업일까지 한편넣기임
 - ※ 상기 GIC 이전원금 계산방법은 신탁 회계처리를 위해 고안된 것으로 수관회사가 사용할지 말지 취사선택

(10단계) 잔고생성 및 가입자 통보

1

수관회사는 실물이전된 상품의 수익률을 어떻게 산출하나요?

- □ 실물이전된 상품은 이관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실물이전명세서上 매수 워금으로 관리되고, 이관회사의 수익률이 그대로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 다만, 이관회사에서 전달받은 매수원금이 수관회사의 매수원금과 관리방식이 다를 수 있어 이후 수익률 관리방식은 수관회사 기준에 따릅니다.

2

실물이전 시 수관회사는 공시수익률 및 가입자별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 공시수익률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에 따라 기초평가 금액과 기말평가금액을 활용해서 산출합니다.
- □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의 가입자별 수익률은 공시수익률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하며, 상품별 수익률은 이관회사에서 전달받은 매수 원금을 참고하여 수관회사 기준에 따라 산출합니다.

3

개별상품의 원금 및 수익률 산정을 위해서는 매수일자별 잔고가 필요한데, 펀드는 '잔여수량기준 매입원금'만 있어도 되나요?

□ 퇴직연금이 아닌 일반계좌의 펀드 매수 시 매수일자별 잔고의 과표 손익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배당 소득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잔여수량기준의 매입원금만 있으면 됩니다.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산방식 등)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을 계산
- o 매수일자별 잔고가 多건인 경우 한 개로 합산해서 전달하며, 일부 매도가 있을 경우 잔여좌수와 매수원금도 함께 전달합니다.

이관회사로부터 수관회사 계좌로 현금이전 및 실물이전이되고 나서 현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 가입자가 의도적으로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 중이었던 경우 실물 이전이 된 후에도 현금성 자산으로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 o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희망하는 경우 수관회사의 안내에 따릅니다.

5

개인형IRP의 경우 현금이전 시 이전이 완료된 경우 완료내용 및 이전금액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는데, 실물이전 또는 실물+현금으로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도 상세한 명세를 가입자에게 안내해야 하나요?

- □ 연금계좌이체 실무지침에 수관회사에서 안내하는 '콜센터 결과 확인 통보 표준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ㅇ 가입자에게 안내하는 주요내용은 총 이전금액과 상품입니다.

③ 기타 사항

1

퇴직연금 가입자 실물이전으로 수관회사가 자사 원리금보장 상품을 수탁할 수 있나요?

- □ 현행 자본시장법(§108)은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 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으며, 퇴직연금감독 규정(§11)은 자산관리계약을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하는 경우 동 자산관리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실물이전에 따른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가능 여부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며,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결과는 추후 업계에 전파할 예정입니다.
 - 만약,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자사 상품의 편입이 허용되면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의 실물이전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 다만, 자사 상품 편입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신규 구축에 따른 개발 비용 및 기간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금번 실물이전 대상에서는 자사 원리금상품 편입을 제외할 예정입니다.

2

<삭 제>

이관회사와 수관회사에서 동일한 상품에 대해 위험등급을 다르게 산정한 경우, 고객이 이관회사에서 가입 시 안내받은 위험등급과 다른 위험등급을 수관에서 적용받게 되는데 금융 소비자보호법 위반은 아닌가요?

- □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투자성상품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관/수관 회사가 책정한 위험등급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 실물이전은 신규매수가 아닌 계속 보유 개념이므로, 적합성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추가매수 시에는 적합성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4

위험자산 투자한도 70% 초과 상태에서 실물이전 가능한가요?

- □ 이관회사 계좌(이전前 계좌)가 위험자산 투자한도 70% 초과상태인 경우라도 실물이전은 가능합니다.
 - 다만, 현금이전 및 실물이전 완료가 된 수관회사 계좌에서도 여전히 70% 초과 상태라면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라서 수관회사는 '퇴직 연금 상품별 보유한도 초과 안내문'을 발송해야 합니다.

고객의 투자성향은 '안정형'인데, 실물이전 펀드의 위험등급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인 경우 실물이전 시 부적합확인서를 징구해야 하나요?

- □ 실물이전은 신규(추가) 매수가 아닌 계속 보유의 개념이므로 신규 판매 시 적용되는 판매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실물이전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권유 절차를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실물이전 이후 추가매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규 판매 프로세스(부적합확인서 징구 등 투자권유 규제)를 따릅니다*.
 - * 수관계좌에서 상품의 매수가 발생할 때 투자권유를 이행하며, 실물이전된 상품을 추가 매수하는 경우에도 신규매수 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행

6

실물이전 신청 시 입금 및 상품이전이 완료되는 날은 언제 인가요?

- □ 수관회사가 이전접수 전문 및 실물이전 요청 전문을 송부하게 되면 실물이전 상품이 확정됩니다.
 - o 전체 상품 중 실물이전이 불가한 상품은 모두 매도되어 현금으로 이전되므로 매도상품 중 매도(환매) 소요시간이 가장 긴 상품이 매도완료된 날의 익영업일 현금 및 실물이 입금(고) 처리됩니다.
 - ※ 전액 현금이전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날(매도완료일) 입금 실물이전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날의 다음 날 입고 및 입금

2024. 10. 31. 오픈예정일에 서비스 개시가 어려운 사업자의 업무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금융감독원에서 각 사업자의 개발 일정 및 진행 경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에, 퇴직연금 실물이전 업무처리 절차 오픈이 지연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지연 사유를 사전 보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o 오픈예정일에 서비스 개시가 어려운 퇴직연금 사업자라 하더라도 既 서비스하고 있던 퇴직연금 현금이전에 대해서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상처리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실물이전 가능여부 조회 시 수관회사가 오픈예정일에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한 사업자인 경우 일괄 불가 처리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에 상품을 제공하는 상품제공기관은 예외없이 오픈
 예정일에 서비스를 개시해야 합니다.
 - o 금융감독원은 각 사업자의 시스템 개발 진행 현황을 고려하여 통합 테스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 퇴직연금사업자는 아니지만 연금저축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개정되는 연금계좌 이체 전문이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테스트에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실물이전 대상인 집합투자증권(펀드)의 재투자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집합투자증권의 재투자가 이뤄지면 좌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실물 이전을 신청한 좌수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o 해당 집합투자증권이 실물이전 가능인 경우에는 재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실물이전 절차를 멈추고, 재투자가 완료되면 실물이전을 재개하도록 합니다.
 - * 재투자 매수 당일과 전일에는 계좌대체 제한
 - o 해당 집합투자증권이 실물이전 불가인 경우 이미 매도가 진행중인 물량과 별개로, 재투자분에 대한 추가 매도가 필요합니다.
 - ※ ETF 분배금 지급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일정기간(약관상으로는 7영업일 이나 실무상으로는 3~4일) 동안 계좌대체 제한

9

명세일자가 동일한 GIC 병합 시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GIC[®]가 실물이전되었고 수관계좌에 이미 명세일자가 동일한 GIC[®]가 있는 경우, 상당수의 보험사는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병합관리(1개의 명세일자로 관리 및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 일부 보험사는 GIC 명세일자가 동일하더라도 매수 건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해서 인식 및 관리 가능
 - 반면 퇴직연금사업자 및 가입자(법인)은 분리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기존 보유분 GIC®에 대해 전량매도 주문을 낸 경우, 상품제공기관이 명세일자가 같은 GIC®까지 함께 매도되는 등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 □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관회사에서도 하나로 병합 관리 (평가·원장정보·매수·매도 등)하는 것이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예금의 경우 약관상 3회 매도제한이 있는데, 실물이전 시 이관회사의 매도 횟수를 전문에 기재하여 수관회사에서 관리해야 하나요?

□ 정기예금의 경우 운용상품목록 전문에 중도해지 횟수 란이 있으며, 실물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도 횟수가 리셋(reset)되는 것은 아니 므로, 수관회사에서 3회 매도제한 여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11

실물이전 시 미징수 수수료는 어떻게 하나요?

- □ 수수료라 함은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말합니다. 수수료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객 자산을 매각해서 충당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실물이전 상품 수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o 따라서, 미징수 수수료를 모두 징수한 후에 실물이전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12

실물만 이전될 경우 실제 이체금액이 0원인데 이체명세서(또는 이전상세내역 A/B)를 수관회사에 전송하지 않아도 되나요?

- □ 실물만 이전된 경우에도 이관회사는 이체명세서(또는 이전상세내역 A/B)를 작성해서 수관회사에 전송하며, 추가로 신규 전문인 '실물이전'에 실물이전 세부내역을 작성해서 전송합니다.
 - o 실물이전 상세내역은 '실물이전명세(060046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TF 실물이전 시 수관회사가 은행인 경우 대고객 유의사항

□ 가입자가 ETF를 은행(수관회사)로 실물이전하는 경우, 은행에서는 가입자 대상으로 ETF 실시간 매매가 불가함을 안내하여 추후 고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4

이관회사에서 수관회사로 실물이전명세 전문 발송 후 현금이체 오류 발생 시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수관회사 계좌의 운용지시 등록여부, 계좌상태 등과 관계없이 현금 이체는 실물이전명세 전문 발송일(=송금일)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므로, 수관회사에서 이체오류를 엄격 적용하여 송금일 당일 입금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합니다.

15

DC 실물이전 신청자 10명 중 4명이 보유상품 모두가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과 전액 현금이전 처리) 이전예정통보서의 실물이전 예정 가입자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 □ 실물이전은 인별로 건건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예정통보서 또한 인별로 수관회사에 전달되므로 실물이전예정 가입자 란에는 0(영) 또는 1(일)만 표시 가능합니다. 가령, 전액현금이전으로 전환된 개별 가입자 4명은 각각 0(영)을 기재합니다.
 - o 참고로, 전액현금이전으로 전환된 4명 관련해서는 이전예정통보 전문의 '이체 대상' 란에 '3. 전액현금 전환'을 선택합니다.
 - ※ '전환현금 전환' 시 실물이전 후속 전문을 더 이상 보내지 않아도 됨

ELB를 발행한 상품제공기관에서 별도의 비밀번호 수취 없이 이관회사에서 수관회사의 위탁계좌로 대체처리가 가능한가요?

□ 고객이 실물이전 요청을 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및 상품제공기관은 고객의 이체의사에 따라 전문을 통해 대체처리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비밀번호 수취 없이 전문을 근거로 이관회사에서 수관회사의 위탁 계좌로 대체처리 가능합니다.

17

DC법인과 규약을 맺고 있는 사업자 간에만 이전이 가능한데, 가입자가 실물이전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려는 회사가 DC법인과 규약을 맺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 이관회사에서는 DC법인과 계약한 다른 퇴직연금사업자 정보를 알수 없습니다.
 - 가입자가 특정 회사를 선택하여 이관회사에서 실물이전 가능여부
 조회 시 규약이 맺어져 있지 않은 회사(수관회사)인 경우에는 실물이전 불가 사유가 '규약 미체결'로 표시되며, 이를 통해 가입자가 규약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채권의 잔고 및 수량의 단위 입력 방식이 금융회사별로 다른 것으로 파악되는데, 정해진 입력방법이 있나요?

□ 실물이전 시에는 금융회사별 잔고수량 관리방식이 아닌 "원 단위"로 채권 잔고 및 수량을 입력하여 전송합니다.

ETF 및 채권의 'KR 상품코드' 란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나요?

□ 퇴직연금 운용지원 전문 "KR 상품코드"의 데이터 정의와 동일하며, ETF 및 채권의 KR상품 코드는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서 부여하는 코드로 사용합니다. (금융투자협회 코드 아님)

20

증권과 비증권 모두 실물이전 시 실물이전청구와 계좌대체청구 전문을 모두 전송해야 하나요?

□ 증권(펀드, ETF, 채권)은 예탁결제원으로 계좌대체청구 전문을, 非증권 (예금, GIC), ELB/DLB는 상품제공기관으로 실물이전청구 전문을 전송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1

실물이전결과 전문에서 ELB 상품정보 내용 중 금리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그리고 ELB 환매불가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 2개의 금리를 가지고 있는 원리금보장 ELB(디지털형)의 경우 그 상단금리, 하단금리 각각을 입력합니다.
 - o ELB 환매불가기간은 발행일, 그리고 [ELB환매신청종료일]부터 [EBL만기일자]까지 기간이며, 이 기간 중에는 현물이전/실물이전 모두 불가합니다.

22

전문 전송일에 평가금액을 입력할 때 전일자 기준으로 하나요? 그렇다면 전송일이 달라지면 평가금액도 달라지나요?

□ 평가금액은 전문 전송일(t)의 직전 영업일(t-1)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송신일이 달라지면 전일자 평가금액도 달라집니다.

원리금보장상품 중 파생결합사채는 ELB 외에 DLB 형태도 있는데, DLB 관련사항은 전문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 □ DLB는 ELB와 기초자산만 다를 뿐 상품구조 및 업무처리 내용은 동일하므로, ELB 관련사항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 ELB, DLB는 전문의 구분 값이 서로 다릅니다.

24

상품정보가 포함된 전문들은 상품정보들이 하나의 key값으로 존재하나요? 그럼 공통 정보인 경우에는 계속 동일한 정보가 쌓이게 되나요?

- □ 전문 구조 상 상품정보는 key값이 아닌 정보성 데이터로 존재하나 사용하는 회사에 따라 상품정보를 key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반복되는 공통정보(예: 계좌관련정보)일지라도 동일한 정보가 계속 관리 되면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25

가입자가 동일 예금상품을 여러 건으로 매수 지시하여 보유하는 경우 매수(명세)일자 별로 실물이전 업무처리를 해야 하나요?

□ 예금 및 GIC는 상품별 및 매수(명세)일자별로 실물이전 업무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같은 예금상품이지만 매수일자에 따라 실물이전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6

DB에서 GIC는 만기연장이 가능한데, 이때 '신규일(명세일 자)'에 최초매수일자를 기재하면 되나요?

□ 최초매수일자를 기재하며, 최종재예치일자는 별도기재합니다.

각종 전문의 '신규일(명세일자)'에 펀드는 어떤 날짜를 입력 해야 하나요?

- □ 펀드는 예금, GIC와 달리 명세일자(매수일자)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값을 입력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ㅇ 편의상, 매수일자가 여러 개인 경우 초일(初日)을 입력합니다.

28

계좌대체청구 전문 전송 시 동일일자에 이관·수관·상품종목 단위 처리내역이 있는데 추가로 청구 전문을 보내면 오류가 생기나요?

- □ 일자, 예탁자계좌번호(이관), 예탁자계좌번호(수관), KR코드가 모두 같은 전문을 추가 전송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 o 다만, 수량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탁원 e-SAFE 화면에서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9

이관기관 전산오류로 실물이전청구 배치 송부가 불가하다면 펀드나 ETF의 경우 e-SAFE를 통해 직접 수기로 계좌대체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 e-SAFE 신규 개발화면 중 퇴직연금 내 "계좌대체 청구 입력"에서 수기로 계좌대체 청구 가능합니다.
 - ㅇ 다만, 11시부터 13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물이전이 이체예정일에 이뤄지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 지연 배상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 원인을 제공한 회사가 부담합니다.

31

기존에는 각종 서식과 전문이 한 쌍으로 되어 있어서 서식을 Fax 송수신 형태로 업무처리가 가능했는데, 실물이전에서는 전문만 존재하는 경우(가령, 실물이전요청-청구-결과 전문)가 있어서 업무처리가 곤란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전문 레이아웃을 다운로드 받아서, 정보를 입력한 뒤 업로드 하면 전문 송수신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 이 위 방식은 사업자 전산이 일시적으로 오류가 난 경우 등 비상 시 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 실물이전 가능여부 조회의 경우 별도 서식 없이 전문만 존재합니다.
 - o 송수신 시간, 데이터의 양 등 종합적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전문 방식으로만 구현가능하며 서류·Fax 등으로는 구현이 어렵습니다.

32

이관회사 DC·IRP에 당해연도 가입자 부담금이 있고, 수관 회사의 DC·IRP에는 세금우대한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관이 가능한가요?

□ 당해연도 가입자 부담금이 존재하는 경우 세금우대한도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1) 가입자가 수관회사에 (실물)이전을 신청했는데 이관계좌 계좌번호가 없거나 오류인 경우 이관회사는 어떻게 회신해야 하나요?
- (2) 가입자가 이관회사에 실물이전을 신청하고 이관회사가 실물이전 조회 전문을 발송했는데, 수관계좌 계좌번호가 없거나 오류인 경우 수관회사는 어떻게 회신해야 하나요?
- □ 가입자가 수관회사에 (실물)이전을 신청했는데 계좌가 없는 경우 이관 회사는 실물이전 조회(이관→수관)를 생략하고 계약이전(계좌이체) 예정취소로 통보합니다.
- □ 가입자가 이관회사에 실물이전을 신청해서 이관회사가 업무조회 전문을 발송했는데 수관계좌가 없는 경우 수관회사는 실물이전조회 결과(수관→이관) 전문의 '처리상태'란을 '2. 불가'로 입력합니다. 이때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는 Null 값으로 전송합니다.

34

실물이전을 실행하면 특정 가입자의 저축은행 예적금 투자 한도(5천만원)가 초과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가입자가 실물이전을 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감독 규정 제8조의2제3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 o 따라서, 동일 저축은행 예적금 원리금 합산 5천만원 초과를 유발 하는 실물이전 건에 대해서는 수관회사가 실물이전 불가로 처리 해야 합니다.

동일한 상품인데 상품제공수수료가 있는 이관회사(A)에서 수수료가 없는 수관회사(B)로 실물이전이 되고, 상품만기 전에 가입자가 또 다른 회사(C)로 재차 실물이전을 하는 경우에 B는 C에게 상품제공수수료가 있다고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없다고 보내야 하나요?

□ 동일한 상품인데도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상품제공수수료 유무가 다른 경우에는 최초 가입 금융회사(1st 이관회사) 기준으로 상품제공수수료 유무를 판단합니다.